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736호, 2022.1.11. 공포, 2022. 7.12. 시행)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3조부터 안 제7조)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로 문구 수정

나.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신설 및 위원 임기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2항)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 근거 신설

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업무 내역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0조의2)

인터넷주소의 등록·할당·관리, 국가DNS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 인터넷주소 사용자 보호 및 분쟁처리 등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의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임기”를 “구성 및 임기”로 하고, 제3조 본문을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조 본문)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주소정책위원회”로,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및 같은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목 및 같은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조, 제7조의 “심의위원회”를 “주소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법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이하 “인터넷정보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가인터넷주소자원 정책·제도 개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터넷주소의 등록·할당·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도메인(domain)이름시스템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
5.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관리
6.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표준화 및 인식 제고 등 이용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 및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 인터넷주소 사용자 보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10. 주소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
11. 그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신 설>	제3조(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 의 구성 및 임기) ①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이하 “주소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을 위촉 또는 지명하기 위하여 인 터넷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관 ·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 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한다)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정하 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 기는 그 직위에 재임(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주소정책위원회 ----- ----- -----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 -----.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 다.	제4조(주소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주 소정책위원회의-----주소정 책위원회를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 주소정책위원회에-- -----

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주소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주소정책위원회의---주소정책위원회의-----.

② 위원장은 주소정책위원회의-----

-----.

③ 주소정책위원회의 -----

-----.

④ 주소정책위원회는-----

-----.

제6조(수당) <u>심의회위원회</u>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심의회위원회</u>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심의회위원회</u>의 의결을 거쳐 <u>심의회위원회</u> 위원장이 정한다. <u><신 설></u>	제6조(수당) <u>주소정책위원회</u>에----- ----- ----- ----- -. 제7조(운영 세칙) ----- ----- <u>주소정책위원회</u>의----- -----<u>주소정책위원회</u>의 ----- <u>주소정책위원회</u> -----. 제10조의2(<u>한국인터넷정보센터</u>의 업무) 법 제9조의2에 따른 <u>한국인터넷정보센터</u>(이하 “<u>인터넷정보센터</u>”라 한다)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u>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u> 2. <u>국가인터넷주소자원 정책·제도 개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3. <u>인터넷주소의 등록·할당·관리에 관한 사항</u> 4. <u>국가도메인(domain)이름시스템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반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u> 5. <u>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u>
---	--

	<u>관리</u> <u>6. 인터넷주소자원의 연구개발·표준화 및 인식 제고 등 이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 <u>7.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u> <u>8.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의 민간 참여 확대 및 인터넷주소 사용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u> <u>9. 인터넷주소 사용자 보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u> <u>10. 주소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u> <u>11. 그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6141